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4. 14 선고 2022나3070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4. 14 선고 2022나30708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5. 12 선고 2021가단5307306 판결

## 전문

원고, 피항소인 대한민국

피고, 항소인 A

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, 모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한길

담당변호사 박종강

변론종결 2023. 3. 17.

판결선고 2023. 4. 14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1가단5307306 판결

## 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### [청구취지]

피고와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21. 2. 22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D에게 같은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21. 2. 23. 접수 제6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라.

### [항소취지]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사자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판결 2쪽 맨 아랫줄 괄호 안의 “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” 부분을 “위 지상 건물을 ‘이 사건 건물’, 위 1호 중 1/2지분을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”로 고쳐 쓰고,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“2. 추가판단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2. 추가 판단

가.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의 요지

피고는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다. 이 사건 건물 1호 등기상소유자는 D, J이나, 실질적인 소유자는 D의 아들들인 J과 B(피고의 부)이다. D은 등기상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쳐준 것일 뿐이다.

나. 구체적인 판단

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.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호의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제1심에서는 B의 단독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, 이 법원에 와서는 J과 B의 공유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, 이 사건 건물 1호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J, B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 **3. 결론**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마성영, 판사 전지은, 판사 주철현

별지